



LEGAL UPDATE

ESG센터

Oct. 2023

美 캘리포니아주, Scope 3 포함 기후공시의무법안 실행 전망

- 국내외 기후 관련 의무공시기준 구체화에 영향 미칠 것으로 예상 -

美 캘리포니아주는 2023. 10. 7. 주지사 승인 하에 일정 규모 이상의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를 의무화하고, 공시대상에 Scope 3¹를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Climate Corporate Data Accountability Act)을 국무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방향에 대해서는 2023. 9. 17.경 개빈 뉴섬(Gavin Christopher Newsom) 주지사가 뉴욕에서 열리는 기후변화주간 행사 첫날 표명하였는데,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당시 연간 10억 달러 이상 수입을 올리는 기업들이 캘리포니아주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할 것이라 밝힌 바 있습니다.

1. 배경 및 주요 내용

미국에서 기후변화 공시에 대한 논의는 종전부터 있었습니다. 2010. 1. 27.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공표한 기후변화 공시에 관한 해석지침(Interpretive Release on Climate Change Disclosure)를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의 연장선에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2023.초경 기후공시 의무화 규정 규칙안(Enhancement and Standardization of Climate-Related Disclosures for Investors)을 발표한 데 이어 금년 내에 구체적인 기후공시 의무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만, 발표시기가 미국 내 이견으로 인한 확정 지연되고 있는 현황으로, 구체적인 발효시기를 예측하는 것은 선부르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미국 연방 차원의 기후공시 의무화 방안 발표에 앞서 美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은 기업의 기후변화대응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SB-253 Climate Corporate Data Accountability Act', 'SB-261 Greenhouse gases: climate-related financial risk'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구체적인 기업의 기후변화대응 정보공개 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SB-253 Climate Corporate Data Accountability Act'는 일정 수준 이상 기업의 Scope 3을 포함한 연간 온실가스 배출 데이터 공개 의무, 'SB-261 Greenhouse gases: climate-related financial risk'는 기업의 기후관련 재무위험 대응을 위한 재무 위험 보고서 공개 의무를 골자로 합니다.

각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¹ Scope이란 온실가스 배출을 분류하는 기준을 의미합니다. Scope 1은 회사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원에서 직접배출되는 온실가스를, Scope 2는 기업이 외부로부터 제공 받은 전기, 열 등에서 간접배출되는 온실가스를 각 의미합니다. Scope 3란 회사의 가치사슬에서 발생하는 모든 기타 간접배출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는 공급업체, 직원 출퇴근, 출장, 회사제품의 사용 및 폐기 등이 포함됩니다.

- [SB-253 'Climate Corporate Data Accountability Act'](#)

- 대상 기업: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하고(does business in California) 연간 매출 10억달러 이상 모든 기업 (본 주, 미국의 다른 주 또는 컬럼비아 특별구의 법률 또는 미국 의회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파트너십, 법인, 유한책임회사 또는 기타 사업체)
- 공개 사항: 2026년부터 Scope 1, 2 배출정보 의무 공개. 2027년부터 Scope 3 배출정보 의무 공개 (Scope 1, 2 공개 후 180일 이내)
- 공신력 있는 제3자의 검증: 2026년부터 Scope 1,2 배출량에 대한 제한적 검증 제공해야 함. 2030년부터 Scope1,2 배출량에 대한 합리적 검증 제공해야 하며, Scope3 배출량에 관한 제한적 검증이 필요할 수 있음
- 보고 주기: 연간
- 보고 장소: 디지털 플랫폼에 공개(규제기관에서 생성 예정)
- 미준수 시 처벌: 행정적 처벌. 보고 법인에 부과되는 행정벌금은 보고 연도에 500만 달러를 초과할 수 없음. 단, Scope3의 경우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산출된 수치인 경우 결과적으로 허위 공시로 밝혀 졌더라도 행정적 처벌을 받지 않으며, 2027년에서 2030년 사이 3년 간 보고에 대해 부과되는 과태료는 미제출에 대해서만 발생
- 발효시점: 2025년

- [SB-261 Greenhouse gases: climate-related financial risk](#)

- 대상 기업: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하고 연간 매출 5억달러 이상 모든 기업(단, 본 주의 보험국 규제 대상이거나 다른 주에서 보험 사업하는 사업체는 미포함)
- 공개 사항: 2026. 1. 1. 이전과 그 이후 격년으로 다음 사항을 모두 공개하는 기후관련 재무 위험 보고서 작성 및 공개. TCFD(기후 관련 재무 공개 테스크포스)의 최종 권고 보고서(June 2017)가 요구하는 수준, 또는 이에 상응하는 보고 요건에 따른 기업의 기후 관련 재무위험, 그리고 파악된 재무위험을 줄이고 적응하기 위해 기업이 취한 조치
- 보고 주기: 격년
- 보고 장소: 자체 인터넷 웹 사이트에 사본 공개
- 미준수 시 처벌: 이 규정에 따른 재무 위험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적 처벌(5만 달러 이하의 벌금 등)

2. 글로벌 기업의 대응

캘리포니아주가 발표한 기후 공개 규정에 대하여 애플(Apple)과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기업인 세일즈포스(Salesforce)는 공개적인 지지를 표명하였으나, 캘리포니아주 상공회의소는 이 법이 제정되면 기업의 비용과 업무량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캘리포니아주는 기후변화를 위한 대응과 관련하여 에너지 대기업들이 공적 불법방해, 허위 과장광고, 법령 위반 등을 저질렀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는 등 이해당사자들과 많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글로벌 기업들이 구체적인 기후 공개 규정에 따른 공시의무를 명확히 따르는 것이 어렵다는 점에서 초래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Scope 3는 추정치의 성격을 가지므로, 기업들에게는 그린워싱 또는 허위공시로 인한 행정적 처벌의 부담이 새롭게 발생하게 됩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또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고려, 법안의 발표시점이 유동적일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3. 시사점

국내에서도 최근 다수 기업의 반발과 주요국의 ESG정보공시 일정을 고려하여 ESG 정보 공시 의무화 [단계적 도입시기가 2025년에서 2026년 이후로 연기](#)한 바 있습니다 . 국내 기업들의 주된 문제제기는, ESG 공시 의무화를 앞두고 있음에도 금융위가 기업 공시 지침(가이드 라인)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특히 Scope 3 배출량은 그 특성상 추정치의 성격을 가질 수 밖에 없으므로, 추정치를 공개하는 기업들은 허위 공시의 부담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며 그에 대한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에서 설명한 [캘리포니아주](#)의 'SB-253 Climate Corporate Data Accountability Act'는 허위 공시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항을 마련하고 구체적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국내기업은 [캘리포니아주](#)의 'SB-253 Climate Corporate Data Accountability Act' 시행의 경과를 지켜보고, 이를 참고로 국내 및 국외의 ESG 정보 공시의무에 대한 대응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우의 ESG센터는 막연한 ESG 업무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면서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업무를 수행하여 오고 있습니다. 또한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이슈를 선제적으로 안내해 드리고, 그에 따른 적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ontacts

신승국

T. (+82) 2 6182 8502

미국변호사

E. synn@yoonyang.com

이근우

T. (+82) 2 6003 7558

파트너변호사

E. klee@yoonyang.com

김정남

T. (+82) 2 6003 8559

수석전문위원

E. jnkim@yoonyang.com

김연각

T. (+82) 2 6182 8718

변호사

E. ygkim@yoonyang.com

양희

T. (+82) 2 6003 7674

컨설턴트

E. hyang@yoonyang.com

김현지

T. (+82) 2 6003 7470

컨설턴트

E. khji@yoonyang.com